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대한민국약전외한약(생약)규격집」일부개정고시 알림

- 1. 「대한민국약전외한약(생약)규격집」을 붙임과 같이 '23.12.27.자 일부개정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2. 아울러 유관 기관·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. 동 개정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 및 고시전문은 식약처 누리집(http://www.mfds.go.kr > 법령·자료 > 제·개정고시 등)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붙임. 1. 「대한민국약전외한약(생약)규격집」일부개정 고시(제2023-93호. 2023.12.27.) 1부.
 - 2. 「대한민국약전외한약(생약)규격집」개정 전문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

본부(56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3개 전부서), 6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(약무정책과장, 한의약정책과장, 한의약산업과 기관장, 관련 단체 협회장

(54개 전부서), 8개 산하기관, 보건환경연구원, 한약재품질검사

전결 2023. 12. 27. 주무관 연구관 한약정책과장 이승민 김지연 고호연

협조자

시행 한약정책과-6751 (2023. 12. 27.)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(오송보건의료행 / www.mfds.go.kr 우 28159

정타운)

전화번호 043-719-3355 팩스번호 043-719-3350 / 대국민 공개 /ysm223@korea.kr

힘내라 대한민국!